



윤리강령 실천 지침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지침은 윤리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한다.

제 2 조(준수의무)

모든 임직원은 윤리 강령 실천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 조(준법 감시인)

1. 회사의 대표자는 본 지침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을 지정 임명한다.
2. 준법감시인은 본 지침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, 내부 신고 접수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2 장 세부 실천 지침

제 4 조(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)

임직원은 당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,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.

제 5 조(청렴 계약 관리)

- ①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등의 계약 담당 직원 등(이하 “계약체결부서”라 한다)은 공사·용역·물품구입을 위한 안내 시 당사의 윤리강령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
- ② “계약체결부서”는 전항의 개별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당사와 거래하는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업체에게 서면 또는 e-mail 로 당사의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, 당사의 윤리 경영 의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청렴 계약 감시)

준법감시인은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현황 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위반 사례 확인을 위한 담당 직원 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. 해당 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3 장 내부 신고

제 7 조(내부 신고자)

- ① 내부 신고는 당사 임직원뿐 아니라 당사와 이해 관계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.
- ② 내부자 신고 제도는 대표이사가 직접 관장하며 실무운영은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한다.

제 8 조(내부신고 대상)

내부신고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 다만 다른 임직원을 비방,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불합리한 차별적 사항

2. 직무관련 향응 · 금품수수 등 사익을 취하는 행위
3.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외부 반출 사항
4. 기타 위법 · 부당한 행위 (부당한 업무지시, 성희롱 행위 등)

제 9 조(신고의무 및 신고방법)

- ① 임직원이 내부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 또는 당사의 이해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게 e-mail, 우편, 직접 면담, 유선 등 가능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.

제 10 조(조사 및 조치)

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하거나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한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조직에 조치 의뢰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결과 통지)

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익명으로 신고하여 결과 통지를 할 수 없거나, 신고자가 결과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및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12 조(신고자 보호)

- ① 내부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되며, 직무상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이를 누설하거나, 내부신고자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기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회사 사규에 따른다.

제 4 장 위반 시 제재

제 13 조(위반 시 제재)

준법감시인은 본 지침을 위한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입찰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, 해지, 해제 및 일정기간 거래 제한 조치 요구
2. 윤리강령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의 경우는 징계 조치 요구.

제 14 조(위반 시 제재)

준법감시인은 제 13 조에 의거 징계를 의뢰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설명하고, 징계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. 01. 02. 부터 시행한다.